Approved Grant Application Form(s) or Funding Agency Copy of any Approval Document(s)

Dear Editors:

We are very grateful for the careful and thorough review given to our manuscript entitled "Surgical strategy of the treatment of atypical femoral fractures" (Manuscript NO. 81029).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Fund for Regenerative Medicine(KFRM)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de: 22D0801L1, 22C0604L1).

The fund certificate is shown below.

임상연구 위탁 연구 계약서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위치한 경북대학교병원(임상연구실시기관, 이하 "실시기관" 이라 칭함)과 경북대학교병원 백승훈 교수(이하 "연구책임자")와 (의뢰기관 주소)에 위치한 ㈜세포바이오(임상연구의뢰자, 이하 "의뢰자" 이라 칭함) 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임상연구실시에 따른 위탁 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임상연구 실시에 관한 "의뢰자"와 "실시기관", "연구책임자"간의 임상연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연구 내용 및 연구 기간)

- 1. 과제번호(IRB승인번호): 2021-07-015
- 2. 임상연구계획서 번호 : CF-M801-1-01
- 3. 임상연구제목 : 대퇴골두 골괴사 환자를 대상으로 탯줄유래 골모세포 기반의 세포 치료제 CF-M801의 안전성 및 탐색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1상 임상시험
- 4. 실시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 5. 연구책임자(소속/직급/성명) : 경북대학교병원/부교수/백승훈
- 6. 임상연구의뢰자 : ㈜세포바이오
- 7. 임상연구수탁기관(CRO): C&R Research
- 8. 목표 연구대상자 : 9 명 (독성여부에 따라 최대 18명)
- 9. 본 연구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경우 계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의뢰자"가 "실시기 관"에 변경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공문 등)를 발송하도록 하고, 변경 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 (연구의 기준 및 관리)

- ① "실시기관"은 의약품 임상연구 관리기준(KGC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및 별표 4)을 포함한 제반 임상연구 관리기준, 헬싱키 선언 및 그 개정본에 반영된 윤리 규칙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 ② "실시기관"은 의약품 임상연구 관리기준(KGC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 조 제1항 및 별표 4)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임상연구계획서에 따라 임상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임상연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라 함)의 규정에 따라 임상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임상연구계획서에 따







라 본 연구를 수행한다. 임상연구계획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 전 삼자 간에 사전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의 업무구분)

- ① "의뢰자"의 업무 : 의약품임상연구관리기준의 의뢰자로서 해당하는 업무
- 1) "의뢰자"는 연구책임자에게 임상연구계획서와 임상연구자자료집을 제공하며, 계약 기간 중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새로 얻은 경우에는 이에 맞춰 임상연구자자료집을 수정하여 다시 제공한다.
- 2) "의뢰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임상연구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알린다.
- 3)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자료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 책임은 "의뢰자"에게 있다. 의뢰자의 업무 중 일부 혹은 전부가 CRO 등에 위임된 경우라도 이는 동일하다.
- 4) 임상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안전 및 의학적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를 "의뢰자"가 알게 되는 경우 연구 도중은 물론 연구가 종료된 이후 2년까지 이를 실시기관, 연구책임자, IRB, 식약처에 고지한다.
- ②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업무: 의약품임상연구관리기준의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해당하는 업무
- 1) "실시시관"은 전체 연구기간동안 본 임상연구가 계획서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절과 설비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하며, 연구진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연구책임자"는 본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 및 전문성을 가지고 본 임상 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3) "연구책임자"는 적정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연구담당자 및 연구진을 구성하여 본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4) "연구책임자"는 본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담당자, 연구진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 진행 점검)

- ① 목록 함께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의 진행 현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실시 기가관'은 이러한 "의뢰자"의 요청에 대하여 연구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보 및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본 연구가 임상연구계획서, 의약품임상연구관리기준에 따라 연구가 실시되고, 자료의 생성, 기록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임상연구 현장방문 및 보고서 열람에 대한 임상연구 관련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뢰자"의 모니터링 또는 점검을 통하여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임상연구계 획서 또는 의약품임상연구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뢰 자"는 이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지하여 "실시기 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미준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6 조 (연구비 등의 지급)

- ① "의뢰자"는 제2조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총 금액 금 (한글) 일억이천오백구십만육천원(\ 125,9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연구비로 "실시기관"에게 [첨부 1]과 같이 지급하고, "실시기관"은 이를 연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실시기관"에게 임상연구계획서에 따라 임상연구를 완료한 각 대상자에 대하여 [첨부 1]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고, 임상연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경우 삼자 협의하여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임상연구계획서에 따라 임상연구 수행 시 [첨부 1]의 연구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의뢰자"는 사전 서면 합의한 항목에 대해 "실시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 ④ 본 계약이 해지 및 임상연구의 중지(조기 종료)가 될 경우 "실시기관"과 "의뢰자"는 해지 및 중지(조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사용한 연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기 지급된 간접비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첨부1 제5항 참조). 여기서 간접비라 함은 '연구지원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로서 연구에 사용되는 건물, 연구지원 시설 및 기자재, 연구 인력, 행정지원 및 지원인력 등 실시기관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연구수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는 비용적 성격에 따라 임상연구 진행 정도에 의거하여 분할지급되는 것임을 각 당사자는 확인한다.

제 7 조 (임상연구용의약품 및 임상연구용 물품)

- ① "의뢰자"에 의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진 임상연구용의약품이 철저히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용되며, "실시기관"은 "의뢰자"와 합의되지 않는 한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 ② 설시기관은 임상연구용의약품 및 물품을 의약품임상연구관리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보관, 유지, 관리한다.
- ③ 본 계약의 종료 시 "실시시관"은 "의뢰자"에게 즉시 미사용 임상연구용의약품을 반납 한다.

제 8 조 (안전성 관련사항의 보고, "연구대상자" 손상의 보상 등)

① "연구책임자"는 본 임상연구 수행 중 중대한 이상반응, 예측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임상연구관리기준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의뢰자" 그리고 임상 연구심사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필요한 경우)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보건행정 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를 중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의약품임상연구관리기준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 ③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구대상자"에게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의 뢰자"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완전히 회복 할 때까지 보상하여야 한다. 단, "의뢰자"는 보상책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면책 한다.
 - 1) "의뢰자"가 제공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 2) "연구대상자"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 합의한 "임상연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음 으로서 야기된 손상.
 - 3) "연구대상자"의 부주의(과실)에서 초래된 손상.

제 9 조 (문서 보관)

- ① "실시기관"은 임상연구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자료를 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최종결과보고 승인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단, 임상연구용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위한 임상연구 관련 자료의 경우 품목허가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 단, "의뢰자"가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최장 15년까지 보관 토록 한다.
- ② "의뢰자"는 "실시기관"의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의 문서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상연구 종료일(결과보고 승인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실시기관"에 문서보관 기간을 확정하고 문서보관료를 납부한다. 단, "실시기관"의 보관장소, 기간 등의 문제 로 인한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자료의 원본을 모두 "의뢰자" 또는 "의뢰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 10 조 (정보 보호)

- ① "실시기관" 은 본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의뢰자"의 제반 정보를 "연구"의 목적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의뢰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외부 로 유출하거나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제반 정보라 함은 "의 뢰자"가 비밀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며 알게 된 "의뢰자"의 모든 정보(본 계약의 체결 및 종료 사실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 ② 위 ①항의 정보 보호 의무는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의뢰자"가 제공하기 이전에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 2) "의뢰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얻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
- 3) 법률에 의해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이 요구되는 정보("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 는 가능한 한 정보의 공개 이전에 이러한 요구를 "의뢰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뢰자"로부터 문서 형태로 제공된 모든 정보를 반환하며 "실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만든 정보의 복사본 및 다른 실체적 형태의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는 데 동의한다. 다만,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의뢰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위 ①항의 의무의 존속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본 1부를 보관할 수 있다.
- ④ 본 조의 의무는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⑤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연구대상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연구"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당국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연구대상자" 신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는 종료기한 없이 영구히 유효하다.
- ⑥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광고물, 판촉물, 출판물,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 등 포함) 상대방 및 연구자 기타 직원의 명칭 및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⑦ 일방 당사자는 고의, 과실로 위 ⑥항을 위반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 ① 결과의 귀속: 이 연구의 결과(소유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상호권 등의 제권리의 본래적, 파생적, 부수적 권리 일체를 포함)는 "의뢰자"의 소유로한다. 단, "연구책임자"는 임상연구결과에 대한 학술목적으로 학회 및 학술지 등에발표 또는 게재하고자 할 경우 "의뢰자"와 협의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의뢰자"와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연구결과를 선전매체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절시키관"은 임상연구 종료 후 임상연구의 대상이 된 약품 및 제제를 구매하여 사용할 의무는 없다.
 - ④ 보고서의 제출: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연구기간의 계약 종료시까지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의 공표시기 및 방법은 "실시기관"과 "의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⑤ "의뢰자"의 계약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파산, 지급불능, 채무조정,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 해산, 청산,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처리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 연구의 결과는 "실시기관"에 귀속된다.

제 12 조 (손해배상 책임)

- ①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의뢰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시기관" 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책된다.
 - 1) "의뢰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임상연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 2) "의뢰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한민국 관련 당국의 지시나 행정조치에 따라 업 무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경우
 - 3) 임상연구 중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의 발생으로 임상연구가 중단되 거나 지연되는 경우
 - 4)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명백한 과실 없이 "실시기관"이나 임상연구 참여 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 5) 정부의 지시나 행정조치, 법령, 폭동, 파업, 전쟁, 불가항력 및 기타 "실시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업무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④ 임상연구의 신뢰성 또는 임상연구자료의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임상연구 결과 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임상연구 결과 또는 그에 대한 대한민국 관련당국의 승인 여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⑤ "의뢰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제 13 조 (계약 해지·해제)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의뢰자" 또는 "실시기관"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본 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에게 발생한 귀책사유는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본다.
- 1) "의뢰자" 또는 "실시기관"이 계약의 실질적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사항의 시정 물 사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2) "의뢰자" 또는 "실시기관"이 법적 조치에 의하여 이 "계약"의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지급불능, 채무조정, 구조조정, 채무재조정, 해산, 청산,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처리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3)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대상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위해 본 임상연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4) "연구책임자"가 더 이상 본 임상연구의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실시 기관"과 "의뢰자" 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

② 해지, 해제의 효과

- 1) 기밀유지 의무는 "계약"이 종결 또는 조기 종결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2) "실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되었을 경우 "실시기관" 에 지급한 연구비를 수행업무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임상연구용의약품과 임상연구용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 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승계 금지)

"의뢰자", "실시기관", "연구책임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석)

"의뢰자"와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은 제2조 제9항 단서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일반사항)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각 당사자의 합의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대한민국 법률과 상관례에 따른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의뢰자"와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 하에 삼자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되,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실시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계약체결일은 마지막으로 서명 날인된 날로 한다.

"의뢰자"와 "실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신뢰와 성실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것을 동의하고 서명 날인하여 삼자 1부씩 보관한다.



"의 뢰 자 " : ㈜세포바이오 "실시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

대 표 자 : 박 현 숙

그에 년 /6월 뇌일

병 원 장 : 김 용 림

그 선 / 6월

연구책임자 : (정형외과) 백 승 훈

그~ 년 / 월 2





[첨부 1] 연구비 산정 상세 내역(붙임 연구비실행예산서 참조)

가. 총괄표

구분 직접비		연구비	비고 인건비+진료•검사비+ 기타	
		₩ 97,000,000		
간접비 -	일반관리비	₩ 14,550,000	직접비의 15%	
	약제관리비	₩ 2,910,000	직접비의 3%	
연구비 총액		₩ 114,460,000	부가가치세(₩ 11,446,000) 별도	
연구비 총액		₩ 114,460,000	부가가치세(₩ 11,446,00	

나. 세부사항

입금시기	총 연구비		상세내역	비고
	₩ 34,338,000	직접비	₩ 29,1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3,433,800)
1차 입금		간접비	₩ 4,365,000 (일반관리비)	
			₩ 873,000 (약제관리비)	
	₩ 57,232,000	직접비	₩ 48,5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5,723,000)
2차 입금		간접비	₩ 7,275,000 (일반관리비)	
			₩ 1,455,000 (약제관리비)	
	₩ 22,892,000	직접비	₩ 19,4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2,289,200)
3차 입금		간접비	₩ 2,910,000 (일반관리비)	
			₩ 582,000 (약제관리비)	
Total	₩ 114,460,000		(부가가치세 별도 ₩ 11	1,446,000)

1. 목표 연구대상자 수

대상자 수 : 9명 (독성 여부에 따라 최대 18명)

경쟁등록 여부 : □ 예 ■ 아니오

2. 지불방법



3. 지불절차

- 1) "실시기관"은 영수용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입금 시 "실시기관"연 구비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053-200-5431)
- 2) "의뢰사"은 연구비 입금 시 "IRB File NO" 비고란에 기재



3) "의뢰자"의 부득이한 경우 청구용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분기 마감시점(3,6,9,12월)을 이전에 연구비 입금.

4. 입금 계좌

지급 은행명	지급계좌	예금주	
IBK기업은행	154-115961-04-131	경북대학교병원	

5. 연구비의 변경, 반납

- 1) 본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목표대상자수 보다 초과 등록되는 경우 연구비를 새로이 산정하여 입금한다. 단, 임상연구심사위원회(IRB)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며 "의뢰자"는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 2) 예상 대상자수보다 적게 등록되는 경우 연구비를 재산정하여 초과 입금된 부분을 반납한다. 이때 기 지급된 간접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간접비: 연구에 사용되는 유·무형의 자원(시설, 지원인력, 기자재, 행정지원 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 경비이며, 기 지급된 간접비는 실질 경비의 최소한의 제반 비용을 의미함.

3) 임상연구의 중지 또는 완료 시 연구비를 정산하며 초과 입금에 대한 연구비(직접비)는 "의뢰자"에게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반납계좌 : (은행명) 하나은행 109-910027-12304 예금주 : ㈜세포바이오

